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 지침

[시행 2025.8.29] [서울대학교학교지침, 2025.8.29,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02-880-516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이하 “학위수여 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대학원 논문제출 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9., 2021. 7. 13.]

제2조(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1개 학기이상 등록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9.]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2개 학기이상 등록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박사통합과정생의 응시자격은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12. 9., 2021. 7. 13.]

제3조(응시절차)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지정된 서식의 응시원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9.]

제4조(시험시행일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각각 1회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2. 9.]

제5조(외국어시험의 시행방법) ① 각 대학(원)별 외국어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외국어시험은 별표 1에서 명시한 과목이외에 각 대학(원)장이 추가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9., 2015. 2. 11., 2015. 3. 19., 2017. 7. 17., 2018. 9. 11., 2018. 12. 28., 2020. 4. 3., 2021. 12. 7., 2022. 1. 24., 2022. 9. 1., 2023. 12. 26.]
 ② 외국어(한국어 제외)시험에서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전자사전 및 전자수첩 제외)을 지참하여 응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9.]
 ③ 외국어과목의 답안작성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9.]
 ④ 외국어(한국어 제외)시험의 세부 시행방법은 각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2. 9.]

제5조의2(종합시험의 시행방법) ① 종합시험(전공시험) 과목 및 세부 시행방법은 각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5. 14., 2010. 7. 9., 2011. 12. 9.]
 ② 각 대학(원)장은 각 학문(전공)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부) 단위로 종합시험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9.]

제6조(출제 및 채점위원)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2. 9.]
 ②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에게는 소속 대학(원)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9.]

제7조(영어시험의 대체시행) ① 영어시험은 TEPS 또는 TOEFL(iBT) 성적으로 대체하며, 대학(원)별·학위과정별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5. 14., 2010. 7. 9., 2010. 8. 19., 2011. 1. 31., 2011. 4. 28., 2011. 12. 9., 2012. 3. 8., 2012. 5. 3., 2012. 6. 14., 2012. 8. 2., 2012. 12. 7., 2013. 2. 21., 2013. 5. 30., 2013. 7. 25., 2014. 3. 20., 2014. 4. 17., 2014. 8. 21., 2014. 12. 11., 2015. 3. 19., 2015. 4. 2., 2015. 5. 14., 2015. 8. 19., 2016. 2. 24., 2016. 3. 31., 2016. 7. 25., 2017. 1. 26., 2017. 5. 23., 2017. 7. 17., 2018. 9. 11., 2018. 12. 28., 2020. 4. 3., 2020. 11. 3., 2021. 7. 13., 2021. 10. 27., 2022. 1. 24., 2022. 9. 1., 2023. 10. 13., 2023. 12. 26., 2024. 2. 21., 2025. 8. 29.]

- ② 영어과목에서 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학위논문심사 서류 제출 전(1학기는 4월초, 2학기는 10월초)까지 소속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성적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9.]
- ③ 각 대학(원)장은 학생들이 제출한 영어 성적에 대한 합격인정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9.]
- ④ [삭제][개정 2011. 12. 9.]

제8조(외국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① 외국어시험 성적(TEPS 또는 TOEFL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어 성적 포함)은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다만, 대학원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취득하여 합격인정 받은 성적은 최종과정 학위취득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9.]

- ② 제1항에서 인정받은 성적이라 함은 대학원 과정 입학고사 전형자료로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 또는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을 말한다.

제9조(외국어시험의 면제) ① 학위수여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외국어과목(영어과목 제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9., 2015. 3. 19., 2021. 7. 13.]

1. 대학원 입학고사에서 외국어시험 성적이 제12조의 학위과정별 합격점수 이상 취득한 경우 [개정 2011. 12. 9.]
 2.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학기)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 대체과목을 이수하여 그 성적이 "C-이상" 또는 "S"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개정 2011. 12. 9.]
 3.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어 어학능력시험의 종류 및 자격시험 별표 3에서 각 대학(원)별로 정한 합격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개정 2011. 12. 9., 2018. 12. 28., 2021. 7. 13.]
 4. 언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과목의 어학능력시험(SNULT)에서 각 대학(원)별로 정한 합격기준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개정 2011. 12. 9.]
 5. 그 밖에 각 대학(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개정 2011. 12. 9.]
- ② 외국어과목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9.]
- ③ 대학원 글로벌인재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위수여 규정 제9조제6항이 정하는 범위에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어 시험(영어과목 포함)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3. 8. 22]

제10조(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① 1과목의 외국어(영어포함)를 부과하는 대학(원)의 외국인학생은 영어(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 성적으로 대체), 한국어, 제2외국어(모국어 제외)중에서 1과목을 선택한다. 다만, 영어과목이 모국어(공용어 또는 공식 언어 포함)인 경우 한국어과목 또는 제2외국어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9.]

- ② 2과목의 외국어(영어포함)를 부과하는 대학(원)의 외국인학생은 영어(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 성적으로 대체), 한국어, 제2외국어(모국어 제외)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한다. 다만, 영어가 모국어(공용어 또는 공식 언어 포함)인 경우에는 영어과목을 면제하고, 한국어 또는 제2외국어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9.]

제11조(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①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은 3월과 9월에 각각 교무처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 12. 9.]

- ② 한국어시험의 시험시간은 60분으로 한다.
- ③ 한국어시험은 필답고사로 시행하되, 과정별(석사, 박사과정) 및 학문분야별(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 12. 9.]
- ④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구술고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2. 9.]

- ⑤ 한국어시험(구술고사 포함)의 시험위원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전임 교원 중에서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9.]
- ⑥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대체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 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1 한국어와한국문화2 중 한 과목)을 수강하고, 그 성적이 "C-이상" 또는 "S"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과목의 취득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23. 12. 26.]
- ⑦ 행정대학원 글로벌공공행정석사학위과정과 국제대학원 개발협력정책석사학위과정, 사범대학 글로벌스포츠 매니지먼트전공 내 드림투게더마스터 프로그램 학생의 경우에는 기초교육원 개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수강하고, 그 성적이 "C-이상" 또는 "S"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과목의 취득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3. 2. 21., 2013. 5. 30., 2014. 4. 17.]
- ⑧ 각 대학(원)에서는 매 학기 한국어시험(구술고사 포함)의 응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지정된 기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합격점수) 과목별(영어과목 제외)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재응시) ①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재 응시 할 수 있다.

- ②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에게는 각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횟수 및 응시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7., 2011. 12. 9.]

제14조(합격자 발표 및 보고) 각 대학(원)장은 매 학기 시험 종료 후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그 결과를 소정의 기한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문서의 보관) 논문제출자격시험 종료 후 시험 관련 문서는 각 대학(원)에서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문제지 원안 및 답안(채점)지 : 5년
- 2. 결과표(사정일람표) : 준 영구
- 3. 기타 서류 : 1년

제16조(자체 내규 제·개정 및 보고) 각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규정과 동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서 자체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을 제·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전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3.]

부칙 <제5호,2025.8.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